

《Summary》

한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전망

한국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주백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절차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도 재판절차가 필요하다.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재판소를 설치한 경우가 있다.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한국의 경우도 거기에 속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만을 담당하는 특별한 재판소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출범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년 동안 접수된 16,000여건 중 15,000여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500여건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해진다.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일반재판소와 별개의 헌법재판소를 두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초기 이론을 형성한 제1기 헌법재판관이 주로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당사자 권리구제에 좀 더 적극적인 판례를 형성하고 그것이 이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 이후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 없었다는 점 등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이 국민들의 생활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헌법결정들을 내놓음으로 인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심화된 헌법학의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또, 정치의 이성화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일반사건과 함께 충실한 헌법재판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독자적인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된다.